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산업위기지역 및 특정 산업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근거 신설〉

- 김정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26호)
- 민병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002호)
- 정진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165호)
- 이상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238호)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527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10

[의안번호 221812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정재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6. 4. 6.
3. 회부연월일 : 2026. 4.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공급약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을 위하여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으로서 탄소중립 전환과정에서 대규모의 청정전력 수요와 설비 전환비용이 수반되며, 특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위치한 철강산업 기업들은 전기요금 부담이 과중하여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전력산업기
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
51조제2항제4호 신설).

[의안번호 221900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민병덕의원 등 17인
2. 발의연월일 : 2026. 5. 18.
3. 회부연월일 : 2026. 5.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계통 기여도, 공정 특수성, 국가 기간산업 유지 필요성 등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요금지원·감면 근거가 미흡하여, 전력요금 부담 완화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을 적시에 운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핵심 기반시설인 제철소는 고온·연속 공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전력을 상시 사용하고, 정전·전압변동 등에 취약한 특성상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전력요금 부담이 생산원가 및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탄소중립 전환비용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 및 수요 둔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철강산업 전반의 비용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전력요금 인상 및 전기요금 구조 변화는 철강업에 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제철소는 전기로·고로 등 공정 특성상 부하변동 대응, 설비 효율

화, 자가발전·부생가스 활용, 수요관리 참여 등 계통 안정과 에너지 효율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국가 전력수급 및 산업정책 측면에서 전력계통 안정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유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전기사업법」에 제철소 등 국가 기간산업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강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력계통 운영의 효율성과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의안번호 221916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진욱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6. 10.
3. 회부연월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등 구체적인 공급조건을 약관으로 정하여 인가받도록 하고 있으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에 비례하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석유화학산업과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업종으로, 특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소재한 철강 및 석유화학 기업들의 경우,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 불안정으로 직결될 우려가 크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산업위기 관련 지정 지역 내에서 철강산업 및 석유화학산업용으로 전기를 공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선택공급약관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력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등).

[의안번호 221923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상회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6. 15.
3. 회부연월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공급약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을 위하여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의 하나로 수소환원제철 실증 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발표한 바 있으나, 수소환원제철은 막대한 전기 사용량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해당 철강산업에 대한 전기료 감면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로서 수소를 이용하여 탄소배출을 줄이는 친환경기술을 사용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의안번호 221952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어기구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6. 6. 26.
3. 회부연월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그 재원으로 전기사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부담금의 축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기금의 실제 축적 규모와 관계없이 부담금이 계속 부과·징수될 수 있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 인상 등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한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이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라 함)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력 산업의 침체로 인한 생산 감소와 고용 위축이 지속되는 등 지역경제 전반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상황임.

이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

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금의 축적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 운용규모를 초과하는 때에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5건의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철강·석유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이나 산업위기지역 등에 소재한 기업의 전력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용 전기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6조), 특정 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등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제4호).¹⁾

아울러 여기구의원안은 기금의 축적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 운용규모를 초과하는 때에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함께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7항).

5건의 개정안은 입법 목적이 서로 같고 개정하려는 조문도 대부분 중복되므로 병합하여 검토함.

-
- 1) 「전기사업법」 제51조(부담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에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가발전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자가발전설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생산된 전기
 2. 전력시장에 판매할 전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양수발전사업용 전기
 3. 구역전기사업자(이 법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포함한다)가 특정한 공급구역에서 공급하는 전기

[개정안 조문대비표]

[illegible]

현 행	김정재의원안	민병덕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이상희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자는 기본 공 급 약 관 을 갈음하 여 선택공 급 약 관 으 로 정한 사항을 선택 할 수 있다. <단 서 신설>			----- ----- ----- ----- ----- ----- ----- --. 다만, 전기 판매 사업자는 「지역 산 업위기 대 응 및 지 역경제 회 복을 위한 특별 법」 제8조 또 는 제10조 에 따라 지정된 산 업 위 기 선 제 대 응 지 역 또는 산업 위기 대 응 특 별 지역(이하 “산업위기 지역”이라 한 다) 에 공 급 되 는 다음 각		

현 행	김정재의원안	민병덕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이상희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신 설>			호의 산업 용 전기에 대하여 대 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 을 감면하 는 내용의 선택공급 약관을 작 성하여야 한다. 1. 석유화 학 산업 (「석유 화학 산 업의 경 쟁력 강 화 및 지원에 관한 특 별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산 업을 말 한다. 이하 같 다)		
<신 설>			2. 철강산		

현 행	김정재의원안	민병덕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이상희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신 설>	④ 전기판 매 사업 자 는 「지역 산업 위기 대응 및 지역 경 제 회복을 위 한 특별 법」 제8 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지정 된 산업위 기 선 제 대 응 지역 또 는 산업위	④ 전기판 매 사업 자 는 「지역 산업 위기 대응 및 지역 경 제 회복을 위 한 특별 법」 제8 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지정 된 산업위 기 선 제 대 응 지역 또 는 산업위	업(「철 강 산 업 경 쟁 력 강화 및 탄 소 중 립 전환 을 위한 특 별 법」 제 2 조 제 1 호에 따 른 산 업 을 말한 다. 이 하 같 다)	④ 전기판 매 사업 자 는 「철강 산업 경쟁 력 강화 및 탄소중 립 전환을 위한 특별 법」 제2 조제4호에 따른 저탄 소 철 강 기 술로서 수 소를 이용 하여 탄소 배출을 줄	

현 행	김정재의원안	민병덕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이상희의원안	여기구의원안
	<u>기대응 특</u> <u>별 지역에</u> <u>공급되는</u> <u>철강 산업</u> <u>용 전기에</u> <u>대하여 대</u> <u>통령령으</u> <u>로 정하는</u> <u>바에 따라</u> <u>전기요금</u> <u>을 감면하</u> <u>는 내용의</u> <u>선택공급</u> <u>약관을 작</u> <u>성할 수</u> <u>있다.</u>	<u>기대응 특</u> <u>별 지역에</u> <u>공급되는</u> <u>철강 산업</u> <u>용 전기에</u> <u>대하여 대</u> <u>통령령으</u> <u>로 정하는</u> <u>기준과 절</u> <u>차에 따라</u> <u>전기요금</u> <u>을 의무적</u> <u>으로 경감</u> <u>하여야 하</u> <u>며, 이를</u> <u>이행하지</u> <u>아니한 경</u> <u>우 기후에</u> <u>너지 환경</u> <u>부장관은</u> <u>시정을 명</u> <u>할 수 있</u> <u>다.</u>		<u>이는 친환경</u> <u>기술을</u> <u>사용하는</u> <u>철강 산업</u> <u>용 전기에</u> <u>대하여 대</u> <u>통령령으</u> <u>로 정하는</u> <u>바에 따라</u> <u>전기요금</u> <u>을 감면하</u> <u>는 내용의</u> <u>선택공급</u> <u>약관을 작</u> <u>성할 수</u> <u>있다.</u>	
④ . ⑤ (생략)	⑤ . ⑥ (현행 제4 항 및 제5 항과 같 음)	⑤ . ⑥ (현행 제4 항 및 제5 항과 같 음)	④ . ⑤ (현행 과 같음)	⑤ . ⑥ (현행 제4 항 및 제5 항과 같 음)	
제51조(부담 금) ① (생략)	제51조(부담 금) ① (현행 과	제51조(부담 금) ① (현행 과	제51조(부담 금) ① (현행 과	제51조(부담 금) ① (현행 과	제51조(부담 금) ① (현행 과

현행	김정재의원안	민병덕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이상휘의원안	여기구의원안
	같음)	같음)	같음)	같음)	같음)
②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사용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② ----- ----- ----- ----- ----- ----- ----- ----- ----- ----- -----.	② ----- ----- ----- ----- ----- ----- ----- ----- ----- ----- -----.	② ----- ----- ----- ----- ----- ----- ----- ----- ----- ----- -----.	② ----- ----- -----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지역산업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또는 제10조	4. 「지역산업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또는 제10조	4. 산업위기 지역 소재 석유화학 산업 또는 철강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으	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4	4. 「지역산업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산

현 행	김정재의원안	민병덕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이상희의원안	여기구의원안
	<u>에 따라</u> <u>지 정 된</u> <u>산 업 위</u> <u>기 선 제</u> <u>대 응 지</u> <u>역 또는</u> <u>산 업 위</u> <u>기 대 응</u> <u>특 별 지</u> <u>역에 소</u> <u>재한 기</u> <u>업 으 로</u> <u>서 대통</u> <u>령 령 으</u> <u>로 정하</u> <u>는 기업</u> <u>에 공급</u> <u>하는 산</u> <u>업용 전</u> <u>기</u>	<u>조에 따</u> <u>라 지정</u> <u>된 산업</u> <u>위 기 선</u> <u>제 대 응</u> <u>지역 또</u> <u>는 산업</u> <u>위 기 대</u> <u>응 특 별</u> <u>지 역 에</u> <u>소 재 한</u> <u>기 업 으</u> <u>로서 대</u> <u>통 령 령</u> <u>으로 정</u> <u>하는 기</u> <u>업에 공</u> <u>급 하 는</u> <u>산 업 용</u> <u>전기</u>	<u>로서 대</u> <u>통 령 령</u> <u>으로 정</u> <u>하는 기</u> <u>업에 공</u> <u>급 하 는</u> <u>산 업 용</u> <u>전기</u>	<u>호에 따</u> <u>른 저탄</u> <u>소 철 강</u> <u>기 술 로</u> <u>서 수소</u> <u>를 이용</u> <u>하여 탄</u> <u>소 배출</u> <u>을 줄이</u> <u>는 방법</u> <u>으로 철</u> <u>강을 제</u> <u>조 하 는</u> <u>기 업 에</u> <u>공 급 하</u> <u>는 산업</u> <u>용 전기</u>	<u>업 위 기</u> <u>선 제 대</u> <u>응 지 역</u> <u>으로 지</u> <u>정된 지</u> <u>역에 공</u> <u>급 되 는</u> <u>산 업 용</u> <u>전기</u>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 행 과 같음)	③ ~ ⑦ (현 행 과 같음)	③ ~ ⑦ (현 행 과 같음)	③ ~ ⑦ (현 행 과 같음)	③ ~ ⑥ (현 행 과 같음)
<신 설>					⑦ 기 후에 너 지 환 경 부 장 관 은 기 금의 축 적액이 대 통 령 령 으 로 정하 는 기 금의 적

현 행	김정재의원안	민병덕의원안	정진욱의원안	이상희의원안	어기구의원안
⑦ (생략)					정 운용규 모를 초과 하는 때에 는 부담금 을 부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현행 제 7 항 과 같음)

* 어기구의원안은 「전기사업법」 제16조를 개정하지 아니함

※ 부칙: 김정재의원안·정진욱의원안·이상희의원안·어기구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민병덕의원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하며, 5건 모두 제5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개정안별 주요 특징 및 차이점 비교]

의안번호 (대표발의)	감면·면제 대상	제16조 전기요금 특례	제51조 기금 부담금 면제
2218126 (김정재의원안)	(요금) 산업위기지역 내 철강산업 (기금)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업	선택공급약관 작성(임의) (안 제16조제4항 신설)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 (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2219002 (민병덕의원안)	(요금) 산업위기지역 내 철강산업 (기금)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업	의무 경감 및 시정명령 (강행) (안 제16조제4항 신설)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 (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2219165 (정진욱의원안)	산업위기지역 내 석유 화학산업·철강산업	선택공급약관 작성 의무 (강행) (안 제16조제3항 단서 신설)	산업위기지역 소재 석유 화학·철강 기업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 (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의안번호 (대표발의)	감면·면제 대상	제16조 전기요금 특례	제51조 기금 부담금 면제
2219238 (이상회의원안)	저탄소철강기술로서 수소를 이용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을 사용하는 철강산업(지역 제한 없음)	선택공급약관 작성(임의) (안 제16조제4항 신설)	해당 기술로 철강을 제조하는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 (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2219527 (여기구의원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 전체	(해당 조항 없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 (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기금의 적정 운용규모 초과 시 부과·징수 정지 (안 제51조제7항 신설)

각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대규모의 전력 수요와 설비 전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들고 있음.

철강산업의 경우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고로²⁾ 방식을 전기로 및 수소환원제철 공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음.³⁾

이와 관련하여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은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6년 4월 21일부터

2) 고로(高爐) 방식: 철광석과 석탄(코크스)을 용광로에 함께 넣고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어 쇳물을 생산하는 전통적인 제철 방식. 석탄을 환원제로 사용하므로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됨.

3) 수소환원제철: 철광석에서 산소를 분리하는 환원제로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여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대신 물이 배출되도록 하는 제철 방식.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2호는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관한 사업을 정부의 추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시행되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음.⁴⁾⁵⁾

아울러 주력 산업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생산 감소와 고용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⁶⁾

한편 같은 법 제22조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1. “철강산업”이란 철광석으로부터 주철이나 강철을 생산하거나 이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금속 공업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3. (생략)

4. “저탄소철강기술”이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기술로서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제11조(저탄소철강기술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기술의 연구개발, 사업화, 사용확대 및 관련 설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한다.

1. 고로(高爐)·전기로(電氣爐)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기술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관한 사업
2.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관한 사업

5)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1. “석유화학산업”이란 석유·천연가스 또는 바이오매스 등을 원료로 기초유분을 생산하거나 이를 주원료로 합성수지·합섬원료·합성고무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6)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규정하고 있음.⁷⁾

이러한 배경에서 각 개정안은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 또는 저탄소철강기술을 사용하는 철강산업 등에 대하여 전기요금 감면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의 근거를 「전기사업법」에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 기간산업의 탈탄소 공정 전환을 뒷받침하고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전력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의 회복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문제의식은 현재의 산업 여건에 비추어 설득력이 있음.

다만, 요금 특례 및 기금 면제의 적용 대상과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통상 규범과 관련하여 제기된 우려, 요금 감면을 의무 규정으로 두는 경우의 법적 쟁점,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정 여건 및 부담금 관련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지원 대상의 범위와 다른 에너지 다소비 업종과의 형평성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7)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같은 법 제15조제1항은 “위기지역기업”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22조는 제5장(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특례)에 규정되어 있음.

전기요금은 원가주의 원칙에 따라 산정되며, 특정 소비자에 대한 특례 할인은 다른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음.⁸⁾⁹⁾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 특례 할인이 적용된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는 3건이 남아 있음.

[현행 전기요금 특례 할인 잔존 현황]

구분	할인 내용	적용기한
초중고교·유치원	기본요금은 당월피크를 요금적용전력으로 적용하고, 동·하계 냉난방 전력량요금의 6~50% 할인	미설정
미국종합처리장	정부지원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미국종합처리장 도정시설의 전기요금 50% 할인	미설정
천일염	천일염 생산설비 설치고객의 전기요금 20% 할인	미설정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건의 개정안 모두에 대하여 특정 지역·산업의 요금 감면은 요금체계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전력소비 구조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모든 소비자에게 공평하게 부과되고

8) 원가주의 원칙: 전기요금을 산정할 때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 소요된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요금을 결정하는 원칙. 현행 전기요금 산정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됨.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
3. 4. (생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 교차보조: 특정 소비자 집단에게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다른 소비자 집단의 요금으로 회수하는 방식을 말함.

있다는 점,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크다면 전기요금 감면보다는 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들어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김정재의원안 및 민병덕의원안은 요금 특례의 대상을 산업위기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산업용 전기로 특정하고 있으며, 기금 부담금 면제의 대상은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요금 감면의 대상은 철강산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기금 부담금 면제의 대상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두 제도의 적용 대상 범위가 서로 달라지게 됨.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대형 사업장의 전력 판매량은 여수시 화학 업종이 10,856GWh, 서산시 석유 업종이 4,830GWh로서 포항시 철강 업종(5,416GWh) 및 광양시 철강 업종(2,172GWh)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많은 수준으로 나타남.

[2025년 산업위기지역 내 주요 업종 대형 사업장의 전력 판매량 및 판매수입]

(단위: GWh, 억원)

구분	여수시 (석유)	여수시 (화학)	포항시 (철강)	서산시 (석유)	서산시 (화학)	광양시 (철강)
판매량	1,346	10,856	5,416	4,830	1,969	2,172
판매수입	2,407	19,103	9,383	8,593	3,485	3,773

주)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수치이며, 지역 전체의 업종별 판매량과는 구별됨. 포항시·광양시의 석유·화학 업종은 판매량이 300GWh 미만으로 표에서 제외함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

이와 관련하여 다른 개정안들의 규정 방식을 살펴보면, 정진욱의원안은 석유화학산업을 감면 대상에 함께 규정하고 있고, 여기구의원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 전체를 기금 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국전력공사도 철강업종의 특정 기업에 대한 요금 감면 시 다른 산업으로 유사 입법 요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따라서 요금 특례 및 기금 면제의 구체적인 요건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범위를 조율하는 논의가 필요하고,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 지원 방식과 개정안의 요금·부담금 감면 방식 중 어느 방식이 지원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통상 규범과 관련하여 제기된 우려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건의 개정안 모두에 대하여 이미 낮은 전기 요금으로 철강산업을 지원하였다는 주장에 따라 해외에서 상계관세가 부과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이 통상 마찰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¹⁰⁾

한국전력공사도 철강업종의 특정 기업에 대한 요금 감면이 상계관세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0) 상계관세: 수입국이 수출국의 보조금 지급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함.

이와 관련하여 이상회의원안은 저탄소철강기술을 사용하는 철강 산업용 전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원의 목적이 온실가스 감축에 있다는 점에서 다른 개정안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음.

이 경우에도 지원의 대상이 특정 산업으로 한정되는 점에 대하여는 앞서의 우려가 동일하게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견임.

따라서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입법 취지가 통상 마찰로 인하여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통상 규범에 부합하는 지원 방식과 요건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전기요금 감면을 의무 규정으로 두는 경우의 법적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제16조제3항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음.¹¹⁾

민병덕의원안은 산업위기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의무적으로 경감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전기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한 것과 다른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을 내용으로 정하는 약관(이하 “선택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을 갈음하여 선택공급약관으로 정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진욱 의원안은 해당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김정재의원안 및 이상희의원안은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 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

한편 정진욱의원안의 제안이유는 선택공급약관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어, 약관의 작성 의무를 부과하는 안 제16조제3항 단서의 문언과 차이가 있음.¹²⁾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감면을 법률로 규정할 경우 탄력적인 요금 운영이 곤란해지고 자율·책임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특정 산업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률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요금의 의무 감면으로 전기판매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소액주주 등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소송의 승소 가능성과는 별론으로 고발·소송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따라서 수혜 대상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함과 동시에 전기판매사업자의 부담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과 의무 규정 중 어느 방식이 적절한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2) 개정 전후의 문언은 다음과 같음.

〈현행〉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을 갈음하여 선택공급약관으로 정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

〈정진욱의원안〉 ③ (현행과 같음). 다만, 전기판매사업자는 … 산업위기지역에 공급되는 다음 각 호의 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의무 규정으로 하는 경우에도 감면의 기준과 절차, 이행 여부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안과, 정진욱의원안과 같이 제16조제3항 단서에 두는 방식과 민병덕의원안과 같이 별도의 항으로 두는 방식 중 어느 규정 형식이 적절한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넷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정 여건 및 부담금 관련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5건의 개정안은 모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특히 어기구의원안은 산업위기선제 대응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 전체를 면제 대상으로 하면서 기금의 축적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 운용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부담금은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전기요금의 1천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해당 요율은 2024년 6월 4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천분의 37에서 1천분의 32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하된 것임.¹³⁾

13)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 6. 4.>

※ 대통령령 제34543호(2024. 6.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특례)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전기사용자가 사용한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율은 해당 전기요금의 1천분의 32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금의 사업비는 2024년 21,145억원에서 2026년 30,857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된 수입원인 법정부담금은 2024년 30,757억원에서 2026년 26,161억원으로 감소하고 있음.

[연도별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비 및 법정부담금 수입]

(단위: 억원)

구분	2024년 (결산)	2025년 (결산)	2026년 (계획)	2027년 (계획)
지출(기금 사업비)	21,145	24,130	30,857	31,206
수입(법정부담금)	30,757	27,646	26,161	26,328
차액(수입-지출)	+9,612	+3,516	△4,696	△4,878

주1) 기금 사업비: 에너지자원정책,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활성화, 에너지공급체계구축, 전력 기술 개발, 에너지기술기반확충, 전력산업경쟁력강화 등 6개 프로그램 지출액의 합계로서, 여유 자금 운용·예탁 등 기금의 그 밖의 지출은 포함하지 아니함

주2) 2024년·2025년은 결산, 2026년은 기금운용계획상 확정액, 2027년은 계획 기준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차액 산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도서·벽지에 대한 전력 공급, 전력 분야 연구개발, 전기안전 관리 등의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이라는 점, 재생에너지 보급·금융지원 및 인공지능 기반 분산형 전력망 구축 등으로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개별 감면이 확대될 경우 전력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¹⁴⁾

14)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전력수요 관리사업
3.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4.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5.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6. ~ 12. (생략)

아울러 정부정책 수행을 위한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금의 적정 운용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어기구의원안이 규정하는 “기금의 축적액” 및 “적정 운용규모”는 현행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그 개념과 산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한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제2항15)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이 신설하려는 면제 규정은 그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음.

다만 같은 법에서 “위기지역기업”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과는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음.¹⁶⁾

15)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같은 법 제15조제1항은 “위기지역기업”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22조는 제5장(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특례)에 규정되어 있음.

16)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자금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기업(이하 “위기지역기업”이라 한다)이 설비투자, 공장의 신설·증설, 경영혁신, 업종전환 및 운전자금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부담금 면제 대상의 확대 및 기금 운용규모 상한의 설정이 기금의 사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제도의 도입 여부와 적용 범위를 조율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어기구의원안 안 제51조제7항의 “기금의 축적액”과 “적정 운용 규모”의 의미 및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안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의 범위와 어긋남이 없도록 면제 대상을 정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부담금 면제 대상의 신설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같은 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부담금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¹⁷⁾.

문 의 처

02)6788-5537

17)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축소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인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부담금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받으면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할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2. 부담금의 부과요건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 6. (생략)